

의안번호	2215215
의 퇴 인	김용태의원
회 답 일	2026.4.20.
추 계 번호	25B690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9조의2 신설 (소규모 영업점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업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신설)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영업점의 범위와 지원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규정
1	안 제29조의2 신설 (소규모 영업점에 대한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업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지원이 시행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 영업점의 범위와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불확정적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려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내용과 방법도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다만, 동법 제23조¹⁾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지원 사업(2026년, 19억 5,200만원)을 통하여 물류효율화기반조성사업(6.4억원), 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0.3억원), 우수물류기업육성사업(7.5억원), 생활물류서비스육성사업(3억원) 등을 시행중에 있어 참고할 수 있음(주요 사업은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1) 제2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휴게시설 및 생활물류 쉼터 등 시설 설치·개선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 개발 및 그 실증을 위한 시범도시·단지의 조성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6.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1] 물류효율화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추진배경

-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주기업 등의 물류현황 진단을 통한 물류업무 효율화(3자·공동·스마트물류 전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위탁기관 : 한국무역협회('08~'15), 대한상공회의소('16~'23), 한국통합물류협회('24~)
 - '08년~'23년간 총 362건을 컨설팅해 해외진출(MOU·계약체결) 61건, 물류비 798.7억원 절감(제3자물류 616.3억원, 공동물류 182.4억원)

□ 사업내용

- (해외진출) 화주·물류기업 공동 또는 물류기업 단독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전 현지조사, 국가별 진출전략 수립 지원
- (3자·스마트·공동물류) 화주기업 물류현황 진단을 통한 최적 개선안 도출 등 3자·스마트물류 도입 및 물류 공동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성과확산)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등 사업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기업의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하고 자발적인 물류 효율화 노력 유도

□ 주요 컨설팅 내용

구분		컨설팅 내용
관리체계	조직구성	물류조직 구성, 적정 물류인원, 고용형태 제시
	시스템	창고관리시스템, 입출고 및 재고관리 시스템 도입-최적화
창고	규모	실효 입·출고율을 고려한 적정 창고 규모 제시
		단기 물량 집중시 외부창고 적정 임대방법 제시
	입지	배송지, 지역별 매출분석을 통한 적정 입지 제시
	보관	입출고 빈도에 따른 적정 보관방식 제시
	배치	창고내 작업동선을 고려한 레이아웃 제시
배송	규모	물동량 대비 적정 배송인력·차량규모 제시
	경로	원자재 조달, 제품배송 최적경로 제시
	아웃소싱	외부 택배사 계약 수준 적정성

[참고자료 2] 물류신고센터 개요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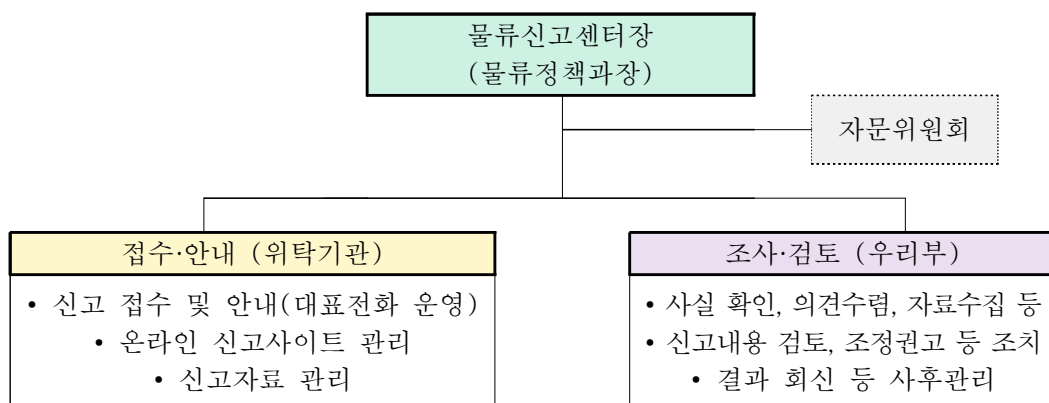
- 일방적 계약변경, 부당한 단가인하 등 물류거래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물류신고센터 운영 중('20년~)
- * '18.9 물류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의2)

- 물류신고센터 신고대상 행위 (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의3 제2항)

1.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2. 단가 인하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계약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3. 체결된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과적·금전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4. 유류비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의 계약단가 반영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

□ 물류신고센터 운영 현황

- 물류신고센터 운영·관리는 국토교통부가 총괄하고, 신고접수 및 안내 업무는 위탁 운영(한국통합물류협회, 화물복지재단) 중
-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www.logis.nlic.go.kr), 대표전화(☎1855-3954, ☎1661-6115)



- 📄 (처리절차) ①신고·상담→ ②조사·검토→ ③조정권고·타기관 통보
- '24년 1,678건 접수·상담 (모두 종결처리)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소 계	물류피해 신고	지입제 피해 신고	택배차 강매 사기 신고
분쟁신고	40	106	113	240	45	147	48
상 답	93	255	235	1,438	308	858	272
합 계	133	361	348	1,678	353	1,005	320

[참고자료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추진배경

- 생활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 필요성 대두
 - 이에 「생활물류서비스법」에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혁신 등을 포함한 「제1차 기본계획(‘22~‘26)」을 수립·시행

□ 주요내용

- (규제혁신) 생활물류 운송수단 다각화, 도서·산간 지역 택배기사의 전속계약 요건 완화, 택배 전용 화물차의 톤급 상향
- (첨단화 촉진) 도심 내 지하배송 기술개발 및 실증, 전자인수증 등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스마트 물류센터 지원
- (인프라 확대) 도심 내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등 주문배송 시설 허용, 유희부지 활용한 택배 집·배송시설 확보 추진
- (근로여건 개선) 택배 서브터미널 불시점검 지속 추진, 배달공제조합 설립 및 공제상품 출시, 생활물류 실태조사 정례화
- (소비자 보호) 생활물류 종사자 신원확인 및 자격관리 강화, 소비자 보호 관련 택배서비스 평가 항목 강화

□ 향후 계획

- 「제2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7~‘31)」 수립 추진

[참고자료 4] 택배산업 서비스 평가 개요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추진배경

- 소비자 권리 보장 및 택배 시장의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13년부터 매년 업체별 서비스 수준 평가·공표
 - － 이를 위해 소비자 만족도, 서비스 안정성, 종사자 및 소비자 권익증진 등에 대한 서비스 평가 실시
-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21.7)으로 매년 택배서비스사업자(기존, 신규)의 법적 등록요건 충족 여부 심사 필요
 - －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에 대한 시설·장비요건, 표준계약서 반영 여부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실사·평가 필요

□ 사업내용

- 「생활물류서비스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훈령)에 근거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 대상 서비스평가 실시
 - － * CJ대한통운, 쿠팡CLS,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20개 택배사업자
 - － 현장조사,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 자료 수집, 설문조사(전문평가단, 고객사·소비자·종사자 만족도), 전문가 심층면접 등 진행
-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요건* 충족 확인을 위해 일반·시설·장비 기준에 대한 서류 요건 검증, 현장 실사 추진
 - － * 영업점, 화물 분류시설, 전산망 시설,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수탁계약서 구비 여부 등

□ 향후 계획

- 업체별 서비스 수준 대국민 공표를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 품질 제고방안 마련 등 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참고자료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개요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추진배경

- 생활물류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 관련 정기조사, 기초통계 부족으로 적시성 있는 산업 지원 및 발전 한계
 - * (시장규모) 택배 ('14) 4.0조원 → ('23) 12조원 / 배달 ('14) 0.4조원 → ('23) 3.2조원
 -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 통계 및 실태 파악 추진

□ 사업내용

- (기초 통계자료 수집) 국내·외 생활물류산업 현황 및 최신 동향조사, 기업·종사자 현황 등 산업 기초 데이터 확보
 - * 국내 생활물류 기업의 매출액, 인프라 규모, 인력 및 자동화 설비 구축 현황 등 객관적 정보 조사 분석을 통해 산업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 지원
- (종사자 실태조사) 택배·소화물배송대행사업 종사자 대상근무형태, 근로여건 등 설문조사 시행
 - * 수입·지출 구조, 평균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평균 운행거리, 취급물량, 보험 가입여부, 차량 구입방법, 계약형태 등
- (대국민 인식조사) 생활물류서비스 이용자(국민, 음식점) 대상 만족도 및 일자리 전망, 문제점 등 인식 조사
- (정책제안) 분석 결과 바탕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정책 제안

□ 향후 계획

-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현황 통계 결과 등 공표, 생활물류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